

부품 ·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품 · 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이 3.31일 공포(대통령령 17187호)됨에 따라 4.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의 시행으로 4월부터 대학교수, 국공립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은 교육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사립학교법상 휴직 · 겸직 · 겸임규정에 대한 특례조치를 받게 되어 부품 · 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3년까지 휴직할 수 있고,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금융회사 ·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부품 · 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고 산업기반기금 등 17개 공공기금도 부품 ·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가 가능하고 동 조합에 외국인이 출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간주되어 외국인투자자와 동등한 혜택(투자자금의 대외송금보장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5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부품 · 소재통합연구단의 부품 · 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종합기술지원사업도 사무국이 설치되는 대로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통합연구단 참여 연구기관 및 연구원은 부품 · 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대가로 상법상 특례적용을 받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매년 종합기술지원실적을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평가 및 예산배정시 우대지원을 받게되어 공공연구기관의 대 산업계 기술지원활동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동 특별조치법상 전문기술인력양성 · 정보화 · 핵심 부품 · 소재 기술개발 · 응용화 · 국제표준화 · 신뢰성향상 기반구축 등 부품 · 소재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근거가 마련된 만큼 부품 · 소재산업에 대해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여 부품 · 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처별 · 기능별로 다기화된 부품 · 소재 육성시책을 일원화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책수요자에 대한 정부의 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 5월말까지 범정부적 부품 · 소재산업발전기본계획을 민 · 관합동으로 수립 · 추진할 방침이다.

부품 · 소재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부품 · 소재산업의 비전은 부품 · 소재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통하여 기존 제조업의기술 · 지식 집약형 산업으로의 전환으로 Global 경쟁시대 핵심 부품 · 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 역할을 담당하여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기반을 구축한다.

그리고, 주력 전통산업(Brick산업)과 신산업(IT · BT · NT : Click산업)의 균형발전의 가교(Bridge role)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용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특별조치법상의 제반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부품·소재특별법상 부품·소재의 정의 및 범위

부품·소재는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자원부령으로 규정(별표 1)

기 준	표준산업분류 상해당분야(*)	예 시
①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92	전통조립산업의 부품(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등)
②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것	12	IT부품, 신소재, 의약품 원재·중간재 등
③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94	산업의 기초적인 부품·소재(볼트, 합금강 등)

※ 산업자원부령에서는 법의 정의 및 위 ①,②,③의 요건에 적합한 부품·소재를 표준산업분류 5단위로 작성(총198개)

2.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정의 및 지원사항

○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구분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자금	부품·소재 원천기술개발	개발자금 출연	매년 통합연구단이 제시하는 핵심부품·소재기술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지원
	시제품개발	개발자금 장기 저리 융자	개발된 부품·소재기술의 시제품 제작시 지원
	사업화	시설투자자금의 장기저리 융자	시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시 지원
	국제 표준화·공용화	국제표준개발비·공용화기술 개발비 출연	개발된 부품·소재 및 기술의 국제 표준화·공용화 추진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정·지원
인력 기술	외부 전문기술인력 활용	교수·연구원의 근무, 임·직원 겸임	해당기업이 필요한 인력과 접촉하여 결정
	전문기술인력 양성·공급	설계·신뢰성·정보화·생산기반 기술	지방 또는 수도권 소재 부품·소재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통합연구단의 종합기술지원사업	연구원 파견, 연구장비·시설 및 정보제공, 기술지도 및 자문 등	지원필요시 통합연구단에 신청하면 심사하여 결정
판로	신뢰성평가·인증	부품·소재의 신뢰성인증지원	시급성·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선정·지원
	신뢰성보험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	기업이 소정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가입
세제	기술개발	자체자금에 의한 기술개발투자시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과 동등 수준 적용
	설비투자	자체자금에 의한 설비투자시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과 동등 수준 적용
	전문화·대형화	관련 세제 감면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 양수도등 전문화·대형화 추진시

○ 부품·소재전문기업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인 경우
○총매출액중 부품·소재의 매출비율이 50% 이상	○총매출액중 부품·소재의 매출비율이 50%이상이고, ○부품·소재 총매출액중 자기계열회사에 대한 부품·소재의 매출비율이 50% 미만

* 대규모기업집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30대 대규모기업집단

3.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제도의 도입목적, 결성주체, 결성요건, 결성 촉진책

○ 도입배경 및 목적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는 상당한 자금과 고급기술인력이 소요되나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

그간 정부의 꾸준한 R&D투자 등에 힘입어 핵심 부품·소재개발에 도전할 만한 인프라가 조성됨으로서 최근 투자자들에게 닛컴이후의 유망투자처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여 민간자금에 의한 핵심 부품·소재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일반투자자에게는 새로운 유망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조합결성의 주체

기존의 창업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신기술투자조합(신기술금융회사)과 달리 투자전문기관이면 결성이 가능하다.

○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결성·등록요건

총출자금 10억원 이상,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 100분의 5이상, 존속기간 5년이상이다.

○ 투자대상

업력·규모와 관계없이 부품·소재전문기업이면 가능하다.

< 창투조합과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

구 분	창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 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조합결성책임자)	○ 창업투자회사에 국한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 은행, 증권회사 등 투자전문 금융기관
등록요건	○ 출자금총액 10억원 이상 ○ 업무집행조합원 출자비율이 100분의 5이상 ○ 조합존속기간 5년이상 ○ 1좌당 최소금액 백만원 ○ 유한책임조합원 수 99인 이하	○ 좌동 ○ 좌동 ○ 좌동 ○ 없음 ○ 없음
투자대상	○ 업력 7년미만의 중소·벤처기업에 국한	○ 부품·소재전문기업(업력·규모 관계없음)

그 밖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결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항으로는 공공기금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산업기반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7개 기금)과 동조합에 대한 외국인의 출자를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토록 하여 투자자금의 대외송금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외국인의 출자를 적극 유도한다. 또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기존의 조합과 동등 수준의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금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반영)